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
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노형욱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1. 의결주문
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스마트도시법」개정에 따른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삭제 관련 내용을 시행규칙에도 반영하기 위한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

개정령안
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신청서 등)

제3조를 삭제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영 제52조제2항”을 “영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규제신속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, 영 제52조제2항”으로, “별지 제3호서식”을 “별지 제2호서식”으로, “별지 제4호서식”을 “별지 제3호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영 제52조제6항”을 “영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규제신속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, 영 제52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법령정비 요청서 등) 영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, 영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확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며, 영 제56조의3제4항에 따른 법령정비 검토 결과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.

별지 서식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 규제신속확인 신청서

[별지 제2호서식] 스마트혁신사업 신청서

[별지 제3호서식] 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

[별지 제4호서식] 규제신속확인 결과 통지서

[별지 제5호서식] (스마트혁신사업, 스마트실증사업) 승인 확인서

[별지 제6호서식] (스마트혁신사업, 스마트실증사업) 연장신청서

[별지 제7호서식] (스마트혁신사업, 스마트실증사업) 연장확인서

[별지 제8호서식] 법령정비 요청서

[별지 제9호서식] 법령정비 요청 확인서

[별지 제10호서식] 법령정비 검토 결과서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신청서 등) ①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6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.	제2조(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신청서 등) 삭제
②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변경·지정해제 신청서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변경 또는 지정해제 사유서를 각각 첨부해야 한다.	
제3조(민간기업등의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제안서)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등의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제안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	제3조(민간기업등의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제안서) <삭제>

제4조(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 등) ① 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, 영 제53조에 따라 영 제52조제2항이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.	제4조(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 등) ① 영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규제신속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, 영 제52조제2항---별지 제2호서식-----별지 제3호서식-----.
② 영 제52조제6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승인 확인서(영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 확인서를 포함한다)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.	② 영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규제신속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, 영 제52조제6항-----
<신설>	제6조(법령정비 요청서 등) 영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, 영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확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며, 영 제56조의3제4항에 따른 법령정비 검토 결과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.

규제신속확인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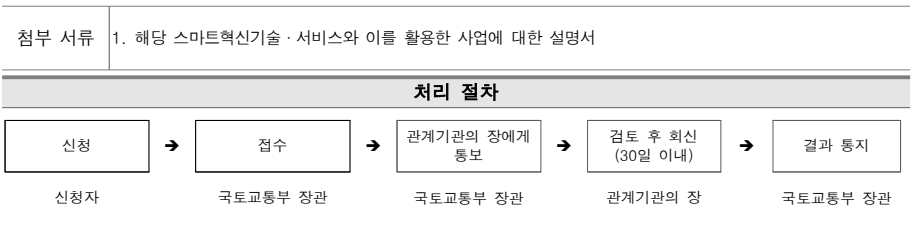
접수번호		접수일	
신청인	법인명(성명)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※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는 있는 경우에만 기재	
	주소		
	대표자명	전화번호	전자우편
사업 개요	명칭		
	주요 내용		
소관 부처 및 기관 (선택적 기재)	예상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상되는 허가등		

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의2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신속확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

스마트혁신사업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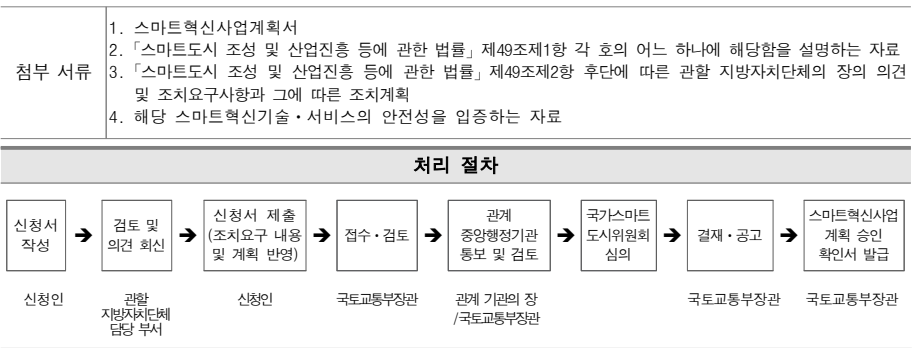
접수번호		접수일	
신청인	법인명(성명)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※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는 있는 경우에만 기재	
	주소		
	대표자명	전화번호	전자우편
사업 개요	명칭		
	주요 내용		
신청 사유	[]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 기준·규격·요건 등이 없는 경우		
	[]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·규격·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		
신청 내용	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대상 법령		
	시행지역	사업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(개월)	

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이 스마트혁신사업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

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
신청인	법인명(성명)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※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는 있는 경우에만 기재	
	주소		
	대표자명	전화번호	전자우편
사업 개요	명칭		
	주요 내용		
신청 사유	[]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 기준·규격·요건 등이 없는 경우		
	[]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·규격·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		
	[]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		
신청 내용	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대상 법령		
	시행지역	사업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(개월)	

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영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이 스마트실증사업을 신청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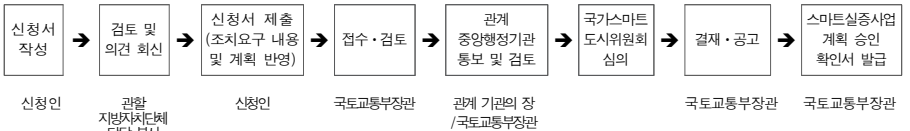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신청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첨부 서류	1.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2.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.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및 조치요구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계획
-------	---

처리 절차



규제신속확인 결과 통지서

신청인	법인명(성명)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※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는 있는 경우에만 기재	
	주소		
	대표자		
사업 개요	명칭		
규제신속확인 결과	1.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함 ※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·절차 등 첨부(관계 법령 포함)		
	2.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않음		
그 밖의 안내 사항			

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스마트혁신기술·서비스의 규제신속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직인

[] 스마트혁신사업
[] 스마트실증사업

승인
확인서

승인번호	제 호	승인일	. . .
신청인	법인명(성명)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※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는 있는 경우에만 기재	
	주소		
	대표자명		
사업 개요	명칭		
	주요 내용		
	유효기간		
	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대상 법령		
	시행지역		
	특례 조건		
	※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·안전·보건의 확보를 위해 불인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을 기재		

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7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[] 스마트혁신사업 [] 스마트실증사업 승인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직인

[] 스마트혁신사업
[] 스마트실증사업

연장
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	
신청인	법인명(성명)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※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는 있는 경우에만 기재	
	주소		
	대표자명	전화번호	전자우편
사업개요	명칭		
	주요 내용		
승인내용	승인번호	승인일	
	유효기간		
	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대상 법령		
	시행지역		
	특례 조건		
	연장 사유		
유효기간 연장 사유 및 기간	신청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(개월)		

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2항 본문,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[] 스마트혁신사업 []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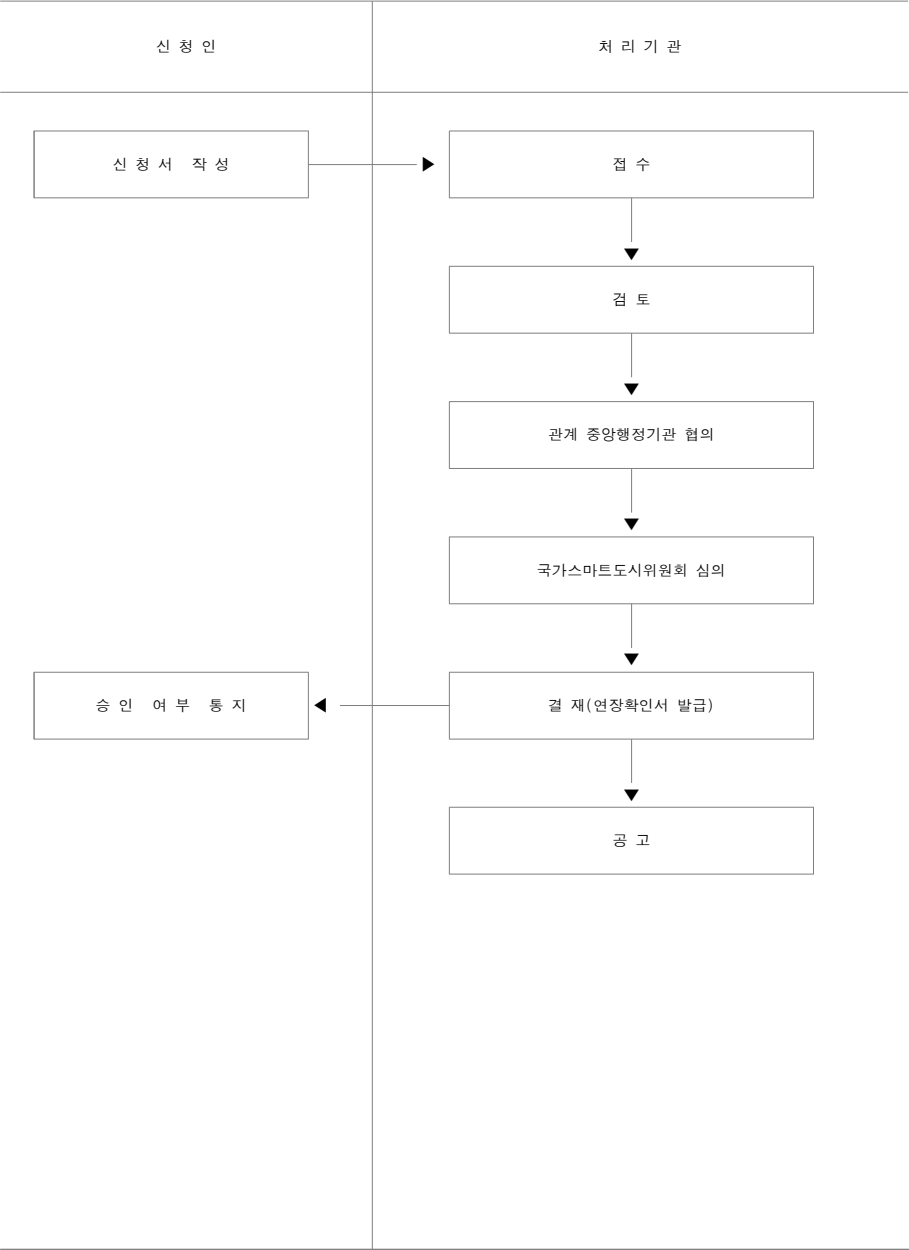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첨부 서류	1.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·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 확인서 사본 2. 해당 스마트혁신사업·스마트실증사업의 연장 사유서 3.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제3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 또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및 실증 결과 4. 해당 스마트혁신사업·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및 조치결과 5.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6. 그 밖에 시행기간 연장에 필요한 사항
-------	--

(뒤쪽)

처리 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서식]

[] 스마트혁신사업
[] 스마트실증사업 연장확인서

승인번호	제 호	시행기간 연장 승인일	. . .
신청인	법인명(성명)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
	주소	※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는 있는 경우에만 기재	
	대표자명		
사업개요	명칭		
	주요 내용		
	유효기간 (당초) . . . ~ . . . (변경) . . . ~ . . .		
	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대상 법령		
	시행지역		
	특례 조건		
	※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·안전·보건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을 기재		

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[] 스마트혁신사업 []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기간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직인

법령정비 요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
요청인	법인명(성명)	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※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는 있는 경우에만 기재
	주소		
	대표자	전화번호	전자우편
사업 개요	승인번호		유효기간
	명칭		
	주요내용		
법령 정비 요청 사항	규제특례 대상 법령 ※ 구체적으로 기재		
	정비 완료 법령		
	정비 필요 법령		
	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법령		
	법령 정비가 필요한 이유		

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의3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요청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첨부 서류	1. 해당 스마트실증사업 승인 확인서 사본 2.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3. 스마트실증사업 관련 규제특례 적용 결과 및 실증 결과 4. 그 밖에 법령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------	--

법령정비 요청 확인서

요청인	법인명(성명)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※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는 있는 경우에만 기재
	주소	
	대표자명	
사업 개요	승인번호	유효기간
	사업 명칭	
	주요 내용	
법령 정비 요청 내용	요청일	
	정비 요청 법령	

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령정비 요청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직인

법령정비 검토 결과서

검토 대상안건	승인번호	유효기간
	사업 명칭	
	주요 내용	
	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대상 법령	
법령정비 검토 의견	규제소관부처	담당부서
	검토의견 상세	
	법령 개정 계획	

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령정비 검토 결과를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직인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842